

제 호

허 가 증

성 명

생년월일(남/녀)

주 소

위치 또는 장소

허가내용

기 간 . . .부터 . . . 까지

「항만법」 제8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 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조사·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해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